신구조문대비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6-13호, 2026. 3. 11.,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6-38호, 2026. 5. 6., 일부개정]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혁신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연구혁신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혁신비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제9조 또는 제10조(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영리기관의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삭 제>
4.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비영리기관의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는 제15조 각 호의 비용 및 이

	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관련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인력지원비로 사용할 수 없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2.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우수학생장학금, 근로장학금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영리기관의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삭 제>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삭 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법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삭 제>
<신 설>	**제16조의2(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는 제16조 각 호의 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또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지원비로 사용할 수 없다 1. 연구개발과제 수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 2.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위한 비용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삭 제>
<신 설>	**제17조의2(비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는 제17조 각 호의 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연구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③ (생 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⑤ ~ <17> (생 략)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⑤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연구혁신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혁신비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연구재료비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연구활동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혁신비를 연구개발과제에서 연차별 평균 5천만 원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혁신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에 따른 사용용도로 집행하는 경우로서 건별 3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2. 제10조에 따른 사용용도로 집행하는 경우로서 건별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3. 인건비에 해당하거나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 4. 국외에서 사용되는 비용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혁신비를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한 연구혁신비에 대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목적 및 거래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혁신비에 대한 증명자료를 적정하게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혁신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회의비 중 식

	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한다){162334065}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한다){164051683}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162334023}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164051557}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제30조(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육아휴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만 제15조제5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6조제3호의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중 가목, 나목은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삭 제>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삭 제>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제36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기관에서 다른 기관·단체로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다른 기관·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기관에서 다른 기관·단체로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다른 기관·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62334071}	2.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6405155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② (생략)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162334073}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164051561}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 ③ (생략)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는 연구지원비로 계상할 수 없다.
<신 설>	⑨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제51조(대학 간접비 사용기준) ① ~ ③ (생 략)	**제51조(대학 간접비 사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학이 사용하는 직접비의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상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④ 대학이 사용하는 직접비의 부족에 따른 간접비의 조정,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실안전관리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의 계상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⑤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삭제>
제69조(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 ③ (생 략)	**제69조(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로 계상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 2. 제65조 제4항 각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로 계상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 2. 제65조 제4항 각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신 설>	⑥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혁신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연구혁신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에 착수하여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에 착수하여

야 하며, 제80조에 따라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야 하며, 제80조에 따라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 부담액(계산식에 따라 현물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으로 한다)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162334083}	1.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 부담액(계산식에 따라 현물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으로 한다)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164051687}
2.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에서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162334085}	2.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에서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164051567}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생 략)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62334281}	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64051569}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 ④ (생 략)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내역을 지정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액 산출 시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미 확약된 금액 및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할 수 있다.{162334087}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내역을 지정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액 산출 시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미 확약된 금액 및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할 수 있다.{164051691}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95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제95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이상인 경우: 연구개	1.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이상인 경우: 연구개

발기관이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162334285}	발기관이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164051693}
2.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162334089}	2.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164051695}
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모두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62334091}	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모두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64051697}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